

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

문서번호:

수 신:

계약번호		가입한도	
계약기간			
차량번호		피보험자	
사고장소			
사고일시		운전자	
피해물		피해자	

상기 자동차는 관계법 및 보험계약에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, 보험 가입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에서 정한 취지와 같이 보험약관의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 청 인:

(인)

주민번호:

주 소:

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귀중

상기 사실을 증명함.

문서번호:

단, 이 증명서 발급일 이후에 확인될 사실에 의하여 관계법 및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 증명서는 무효임.

상기 사고가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음주운전, 무면허, 뺑소니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대인 I (의무보험)은 지급보험금 전액(피해자 1인당 최대1.8억원), 대인 II (의무보험초과)는 1사고당 1억원, 대물배상은 의무보험까지는 지급보험금 전액(1사고당 최대 2천만원), 의무보험 초과분에 대해서는 1사고당 5,000만원은 당사의 보상책임이 없습니다. (단, 본 내용은 2022년 7월 28일 이후 책임개시 기준)